

●대통령공고 제370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

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大韓民國憲法 제1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과학기술통신부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조현
국무위원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국무위원 국립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국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기후환경부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원민경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중소기업부장관	한성숙
국무위원 기획예산부장관	박흥근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제안이유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킁킁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이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발전해 왔다. 숭한 희생을 견디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4·19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숭고한 역사다.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의료·문화·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의 현실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2026년 6월 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국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별도의 국민투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것은 전면적인 개헌 추진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헌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기회다.

국회는 오랫동안 개헌에 필요한 논의와 준비를 계속해 왔다. 최근 18세 이상 국민 1만 2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0%가 찬성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 방안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뜻을 헌법에 담겠다는 결단과 실행이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첫째, 헌법 제명을 한글화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78년간 한자로 표기된 제명을 사

용하고 있다. 2026년은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므로, 「大韓民國憲法」이 「대한민국헌법」으로 제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 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언급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일자리·주거·교통 등을 포괄하는 지역의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

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마. 시행일과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19民主理念”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 안 자

국회의원 187인

우원식	한병도	서왕진	윤종오	천하람
용혜인	한창민	김한규	이기현	이언주
민병덕	문정복	이용선	박홍배	차지호
한민수	윤종균	노종면	서미화	민홍철
손명수	고민정	이정문	박용갑	백승아
윤준병	전용기	이강일	문진석	이연희
박지원	김영배	소병훈	안규백	권향엽
문대림	김 윤	이상식	박 정	황명선
유동수	장철민	이재관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추미애	강준현	김기표	김준혁
김주영	서삼석	김문수	박균택	이주희
박홍근	이정현	안태준	김성환	박상혁
임미애	진선미	김우영	남인순	정일영
이광희	김정호	허 영	정태호	조정식
이해식	김윤덕	이재강	이개호	최민희
염태영	박성준	조인철	위성곤	박해철
김교홍	민형배	이용우	박정현	서영교
채현일	문금주	김용만	부승찬	김동아

전진숙	이건태	모경종	천준호	김영진
정준호	한정애	박지혜	박찬대	강득구
박희승	장종태	김태년	송재봉	신정훈
권철승	이재정	맹성규	이학영	정청래
홍기원	정동영	김준환	임오경	박수현
이성윤	안도걸	전현희	어기구	진성준
서영석	오세희	송옥주	김 현	박선원
한준호	김남희	복기왕	김영환	조승래
이수진	박민규	윤건영	주철현	김용민
김영호	조계원	정진욱	임호선	김현정
윤호중	황 희	김승원	이훈기	최기상
김민석	전재수	송기현	박주민	허성무
김성희	김상욱	이원택	김태선	김병주
황정아	김원이	정성호	안호영	허종식
양부남	윤후덕	이인영	박범계	곽상언
이소영	정춘생	강경숙	차규근	김선민
황운하	이해민	백선희	신장식	김준형
박은정	김재원	전종덕	정혜경	손 솔
이준석	이주영	이춘석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최혁진			